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1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4나14557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27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1.  
판 결 선 고 2015.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7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김성수라는 사람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마켓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터넷 spo-rnk.net에 접속해서 신고접수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605-0213-)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302-0749-)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 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0분경까지 위 합계 5,970,380원이 입금되었고 그와 거의 동시에 하나은행 현금지급기로 5,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인출되었다.

라.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한 대구중부경찰서는 '피고의 행위에 (접근매체의) 적극적 양도행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입건치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하여 제3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970,38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sup>1)</sup>.

###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한 바, 항소이유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주장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한 은행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직후에 발생한 점, ② 피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한 통장과 현금카드의 수가 각 1개에 불과한 점, ③ 피고가 위 교부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를 위한 대출 목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그 밖에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용등급자의 절박한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돈을 이체하기에 이르렀다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고의 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서희경

              판사      손승우